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14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 : 김원이 • 이상직 • 양이원영

서영석 · 김승원 · 인재근

송재호 · 오영환 · 이성만

윤미향 · 홍익표 · 이원욱

기동민 • 박성준 • 이재정

이수진(비) · 강민정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을 규정하면서 재해의 예방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 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 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
제한) ① (생 략)	제한)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
	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
	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
	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